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

-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 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및 류의 주를 포함하여 202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은 제4.14조제3항나호에 따라 수행된다.
-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 이 부속서 내의 류 주해는, 특정한 제외가 있지 않는 한, 해당 류 내의 모든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된다.
- 다음의 정의는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를 말한다.
 -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 이 부속서 제3열의 목적상,
 -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3조에 따라 해당 상품이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소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35퍼센트 이상일 것 [RVC(35)]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RVC(40)]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 사.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RVC(30/40)]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류	호	소호 (HS 2022)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1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 · 벼새			
			– 말			
		0101.2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 축우(畜牛)			
		0102.2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벼팔로			
		0102.3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 기타			
		0103.91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0104.10	–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 염소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 기타	
	0105.94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 포유동물	
	0106.11	--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둑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 (<i>Camelidae</i>)]	완전생산기준
	0106.14	--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 조류	
	0106.31	--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 앵무류[파럿류(parrots) · 캐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 타조와 에뮤(emu) [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 (<i>Dromaius novaehollandiae</i>)]	완전생산기준
	0106.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곤충류	
	0106.41	--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육과 식용 설육(脣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1.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1.30	- 뼈 없는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2.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2.30	- 뼈 없는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12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19	-- 기타 - 냉동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2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3.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23	-- 뼈 없는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3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43	-- 뼈 없는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4.50	- 염소의 고기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5	0205.00	말 · 당나귀 · 노새 · 벼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		소 · 돼지 · 면양 · 염소 · 말 · 당나귀 · 노새 · 벼새의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1	-- 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2	-- 간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3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 간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8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6.9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3	-- 절단육과 설육(脣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14	-- 절단육과 설육(脣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 칠면조의 것	
	0207.24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5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6	-- 절단육과 설육(脣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27	-- 절단육과 설육(脣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 오리의 것	
	0207.4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4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 거위의 것	
	0207.5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5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7.60	- 기니아새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脣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 토끼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30	- 영장류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40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뉴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50	- 과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6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i>Camelidae</i>)과]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8.90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 돼지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09.90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돼지고기	
		0210.11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12	--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1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20	- 쇠고기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 영장류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2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뉴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3	-- 과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210.9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3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 관상용	
		0301.11	--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그 밖의 활어	
		0301.91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i>) · 옹코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렁쿠스 아파케	완전생산기준

		(<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i>Oncorhynchus chrysogaster</i>)]	
	0301.92	-- 뱀장어[양궐라(<i>Anguilla</i>) 속]	완전생산기준
	0301.93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 (<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 (<i>Megalobrama</i>) 속]	완전생산기준
	0301.94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i>Thunnus thynnus</i>)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완전생산기준
	0301.95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완전생산기준
	0301.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11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 (<i>Oncorhynchus clarki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 (<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 (<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i>Oncorhynchus chrysogaster</i>)]	완전생산기준
	0302.13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chawytscha</i>) · 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옹코링쿠스 마소 (<i>Oncorhynchus masou</i>)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i>Oncorhynchus rhodurus</i>)]	완전생산기준
	0302.14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완전생산기준
	0302.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i>Pleuronectidae</i>)과 · 바디대 (<i>Bothidae</i>)과 · 사이노글로시대(<i>Cynoglossidae</i>)과 · 솔레이대(<i>Soleidae</i>)과 · 스코프탈미대(<i>Scophthalmidae</i>)과 · 시타리대(<i>Citharidae</i>)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2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i>Hippoglossus hippoglossus</i>) · 히포글러서스 스텐노레페스(<i>Hippoglossus stenolepis</i>)]	완전생산기준
	0302.2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i>Pleuronectes platessa</i>)]	완전생산기준
	0302.23	-- 서대[솔레아(<i>Solea</i>) 속]	완전생산기준
	0302.24	-- 터벗(turbot) [프세타 맥시마(<i>Psetta maxima</i>)]	완전생산기준
	030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다랑어 [터너스(<i>Thunnus</i>)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줄무늬 벼니토) [카추위누스 펠라미스 (<i>Katsuwonus pelamis</i>)].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 [터너스 알라룽가 (<i>Thunnus alalunga</i>)]	완전생산기준
	0302.32	-- 황다랑어 [터너스 알바카레스 (<i>Thunnus albacares</i>)]	완전생산기준
	0302.33	-- 가다랑어 (줄무늬 벼니토) [카추위누스 펠라미스 (<i>Katsuwonus pelamis</i>)]	완전생산기준
	0302.34	-- 눈다랑어 [터너스 오베서스 (<i>Thunnus obesus</i>)]	완전생산기준
	0302.3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 [터너스 티너스 (<i>Thunnus thynnus</i>)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i>Thunnus orientalis</i>)]	완전생산기준
	0302.36	-- 남방 참다랑어 [터너스 맥코이 (<i>Thunnus maccoyii</i>)]	완전생산기준
	0302.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 (<i>Clupea pallasii</i>)], 멸치 [엔그라울리스 (<i>Engraulis</i>) 속],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 (<i>Sardinops</i>) 속],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i>Sardinella</i>) 속], 브리스링 (brisling)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i>Sprattus sprattus</i>)],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 (<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 (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 (<i>Rastrelliger</i>) 속], 삼치 [스콤버로모러스 (<i>Scomberomorus</i>) 속], 전갱이 [트라카러스 (<i>Trachurus</i>) 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 (<i>Caranx</i>) 속],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듐 (<i>Rachycentron canadum</i>)], 병어 [팜푸스 (<i>Pampus</i>) 속], 꽁치 [콜로라비스 사이라 (<i>Cololabis saira</i>)], 가라지 [데캡테러스 (<i>Decapterus</i>) 속],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 (<i>Mallotus villosus</i>)],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 (<i>Euthynnus affinis</i>)], 벼니토 [사르다 (<i>Sarda</i>) 속], 새치류, 둑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 (<i>Istiophoridae</i>)].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41	-- 청어 [클루페아 하렌구스 (<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 (<i>Clupea pallasii</i>)]	완전생산기준
	0302.42	-- 멸치 [엔그라울리스 (<i>Engraulis</i>) 속]	완전생산기준
	0302.43	-- 정어리 [사르디나 필차르두스 (<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 (<i>Sardinops</i>) 속], 사르디넬라 [사르디넬라 (<i>Sardinella</i>) 속], 브리스링 (brisling)이나 스프랫 (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i>Sprattus sprattus</i>)]	완전생산기준
	0302.44	--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 (<i>Scomber japonicus</i>)]	완전생산기준
	0302.45	-- 전갱이 [트라카러스 (<i>Trachur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2.46	-- 날쌔기 [라키센트론 카나듐 (<i>Rachycentron canadum</i>)]	완전생산기준
	0302.47	--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0302.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 (<i>Bregmacerotidae</i>) 과 · 유클리티대 (<i>Euclichthyidae</i>) 과 · 가디대 (<i>Gadidae</i>) 과 · 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 과 · 멜라노니대 (<i>Melanonidae</i>) 과 · 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 과 · 모리대 (<i>Moridae</i>) 과 · 무라에놀레피디대 (<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다만, 제0302.91	

		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51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완전생산기준
	0302.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완전생산기준
	0302.53	-- 검정대구[풀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완전생산기준
	0302.54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속 · 유르피키스(<i>Urophycis</i>)속]	완전생산기준
	0302.5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완전생산기준
	0302.56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완전생산기준
	0302.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속 · 실루러스(<i>Silurus</i>)속 · 클라리아스(<i>Clarias</i>)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멜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 · 시리누스(<i>Cirrhinus</i>)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뱀장어[앙귈라(<i>Anguilla</i>)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속].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속]	완전생산기준
	0302.7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속 · 실루러스(<i>Silurus</i>)속 · 클라리아스(<i>Clarias</i>)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속]	완전생산기준
	0302.73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멜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 · 시리누스(<i>Cirrhinus</i>)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완전생산기준
	0302.74	-- 뱀장어[앙귈라(<i>Anguilla</i>)속]	완전생산기준
	0302.7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81	-- 꼽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i>Rajidae</i>)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속]	완전생산기준
	0302.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속]	완전생산기준
	0302.85	-- 돔[스파리대(<i>Sparidae</i>)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간·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2.91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완전생산기준
		0302.92	--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펠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11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완전생산기준
		0303.12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chawytscha</i>)·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옹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옹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완전생산기준
		0303.13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완전생산기준
		0303.14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완전생산기준
		0303.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속·실루러스(<i>Silurus</i>)속·클라리아스(<i>Clarias</i>)속·익타루러스(<i>Ictalurus</i>)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카라시우스(<i>Carassius</i>)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시리누스(<i>Cirrhinus</i>)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라베오(<i>Labeo</i>)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i>)·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뱀장어[양궐라(<i>Anguilla</i>)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속].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속]	완전생산기준
		0303.24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속·실루러스(<i>Silurus</i>)속·클라리아스(<i>Clarias</i>)속·익타루러스(<i>Ictalurus</i>)속]	완전생산기준
		0303.25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카라시우스(<i>Carassius</i>)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시리누스(<i>Cirrhinus</i>)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라베오(<i>Labeo</i>)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i>)·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완전생산기준
		0303.26	-- 뱀장어[양궐라(<i>Anguilla</i>)속]	완전생산기준
		0303.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p>– 넙치류[플루로넥티대(<i>Pleuronectidae</i>)과·바디대(<i>Bothidae</i>)과·사이노글로시대(<i>Cynoglossidae</i>)과·솔레이대(<i>Soleidae</i>)과·스코프탈미대(<i>Scophthalmidae</i>)과·시타리대(<i>Citharidae</i>)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p>	
	0303.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i>Hippoglossus hippoglossus</i>)·히포글러서스 스텔노레피스(<i>Hippoglossus stenolepis</i>)]	완전생산기준
	0303.3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i>Pleuronectes platessa</i>)]	완전생산기준
	0303.33	-- 서대[솔레아(<i>Solea</i>)속]	완전생산기준
	0303.34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i>Psetta maxima</i>)]	완전생산기준
	0303.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p>– 다랑어[터너스(<i>Thunnus</i>)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벼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i>Katsuwonus pelamis</i>)].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p>	
	0303.4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i>Thunnus alalunga</i>)]	완전생산기준
	0303.4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i>Thunnus albacares</i>)]	완전생산기준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벼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i>Katsuwonus pelamis</i>)]	완전생산기준
	0303.4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i>Thunnus obesus</i>)]	완전생산기준
	0303.4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i>Thunnus thynnus</i>)·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완전생산기준
	0303.4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완전생산기준
	0303.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p>–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듐(<i>Rachyc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캡테러스(<i>Decapterus</i>)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벼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둑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p>	
	0303.5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완전생산기준
	0303.5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완전생산기준

		0303.5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완전생산기준
		0303.55	--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3.56	-- 날째기[라키센트론 카나дум(<i>Rachycentron canadum</i>)]	완전생산기준
		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0303.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63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완전생산기준
		0303.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완전생산기준
		0303.65	-- 검정대구[풀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완전생산기준
		0303.66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 속 · 유르피키스(<i>Urophycis</i>) 속]	완전생산기준
		0303.67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완전생산기준
		0303.68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완전생산기준
		0303.6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81	-- 꼽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3.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3.8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3.91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완전생산기준
		0303.92	--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3.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엘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텁토바르부스 호에베니	

		(<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昂ڱල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3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멜카(<i>Oncorhynchus nerka</i>)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chawytscha</i>) · 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옹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2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i>Pleuronectidae</i>) 과 · 바디대(<i>Bothidae</i>) 과 · 사이노글로시대(<i>Cynoglossidae</i>) 과 · 솔레이대(<i>Soleidae</i>) 과 · 스코프탈미대(<i>Scophthalmidae</i>) 과 · 시타리대(<i>Citharidae</i>) 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 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 과 · 가디대(<i>Gadidae</i>) 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 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 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 과 · 모리대(<i>Moridae</i>) 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 과의 어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7	-- 꼽상어와 그 밖의 상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8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 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4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엘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	2단위 세변변경기준

		(<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양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	
	0304.52	-- 연어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6	-- 꼽상어와 그 밖의 상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5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엘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웹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양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6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73	-- 검정대구[풀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 속 · 유르피키스(<i>Urophyci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75	-- 명태[테라그라 칼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7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벨카(<i>Oncorhynchus nerka</i>)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chawytscha</i>) · 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옹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2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i>Pleuronectidae</i>)과 · 바디대(<i>Bothidae</i>)과 · 사이노글로시대(<i>Cynoglossidae</i>)과 · 솔레이대(<i>Soleidae</i>)과 · 스코프탈미대(<i>Scophthalmidae</i>)과 · 시타리대(<i>Citharidae</i>)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7	-- 다랑어[터너스(<i>Thunnus</i>) 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줄무늬 베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i>Katsuwonus pelami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8	-- 꼽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8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웹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昂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는 제외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6	-- 꼽상어와 그 밖의 상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4.9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 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5.20	-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 [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실루러스(<i>Silurus</i>) 속·클라리아스(<i>Clarias</i>) 속·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시리누스(<i>Cirrhinus</i>) 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라베오(<i>Labeo</i>) 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웹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昂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가디대(<i>Gadidae</i>)과·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모리대(<i>Moridae</i>)과·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chawytscha</i>)·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옹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옹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3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 [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실루러스(<i>Silurus</i>) 속·클라리아스(<i>Clarias</i>) 속·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시리누스(<i>Cirrhinus</i>) 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라베오(<i>Labeo</i>) 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웹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昂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p>–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p>	
	0305.51	<p>--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p>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52	<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뼘장어[昂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p>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53	<p>--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p>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54	<p>--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 속], 정어리[사르디나 월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 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 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출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 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i>Scomberomorus</i>) 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 속], 출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 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듐(<i>Rachyc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 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자지[데캡테러스(<i>Decapterus</i>) 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페니스(<i>Euthynnus affinis</i>)], 벼니토[사르다(<i>Sarda</i>) 속], 새치류, 둑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p>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5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p>–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p>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62	<p>--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p>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63	--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 속], 메기 [판가시우스(<i>Pangasius</i>) 속 · 실루러스(<i>Silurus</i>) 속 · 클라리아스(<i>Clarias</i>) 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 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멜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 속 · 시리누스(<i>Cirrhinus</i>) 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 속], 뱀장어[양궐라(<i>Anguilla</i>) 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 속]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 상어 지느러미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2	-- 어류의 머리 · 꼬리 · 부레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냉동한 것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i>Palinurus</i>) 속 · 파누리루스(<i>Panulirus</i>) 속 · 자수스(<i>Jasus</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i>Homarus</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4	-- 게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i>Nephrops norvegicus</i>)]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i>Pandalus</i>) 속 · 크란곤 크란곤(<i>Crangon crangon</i>)]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7	-- 그 밖의 새우류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19	-- 기타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i>Palinurus</i>) 속 · 파누리루스(<i>Panulirus</i>) 속 · 자수스(<i>Jas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i>Homarus</i>) 속]	완전생산기준
		0306.33	-- 계	완전생산기준
		0306.3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i>Nephrops norvegicus</i>)]	완전생산기준
		0306.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i>Pandalus</i>) 속 · 크란곤 크란곤(<i>Crangon crangon</i>)]	완전생산기준
		0306.36	--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i>Palinurus</i>) 속 · 파누리루스(<i>Panulirus</i>) 속 · 자수스(<i>Jasus</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i>Homarus</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93	-- 계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9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i>Nephrops norvegicus</i>)]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95	-- 새우류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6.9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굴	
		0307.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7.1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 가리비와 그 밖의 펙터니대(<i>Pectinidae</i>)과의 연체동물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7.2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 홍합[미틸루스(<i>Mytilus</i>)속 · 페르나(<i>Perna</i>)속]	
		0307.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7.3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42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7.43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변변경기준
		0307.4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문어[옥토퍼스(<i>Octopus</i>)속]	
		0307.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7.5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완전생산기준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i>Arcidae</i>)과·아르크티치대(<i>Arcticidae</i>)과·카르디대(<i>Cardiidae</i>)과·도나치대(<i>Donacidae</i>)과·히아텔리대(<i>Hiatellidae</i>)과·마르크트리대(<i>Mactridae</i>)과·메소데스마티대(<i>Mesodesmatidae</i>)과·마이이대(<i>Myidae</i>)과·세멜리대(<i>Semelidae</i>)과·솔레쿠르티대(<i>Solecurtidae</i>)과·솔레니대(<i>Solenidae</i>)과·트리다크니대(<i>Tridacnidae</i>)과·베네리대(<i>Veneridae</i>)과]	
		0307.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7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7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전복[할리오티스(<i>Haliotis</i>)속])과 수정고등류[스트롬버스(<i>Strombus</i>)속]	
		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i>Haliotis</i>)속]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등류[스트롬버스(<i>Strombus</i>)속]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3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i>Haliotis</i>)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4	-- 냉동한 수정고등류[스트롬버스(<i>Strombus</i>)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7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i>Haliotis</i>)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8	-- 그 밖의 수정고동류[스트롬버스(<i>Strombus</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i>Stichopus japonicus</i>), 홀로투로이데아(<i>Holothuroidea</i>)]	
		0308.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1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1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i>Strongylocentrotus</i>) 속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i>Paracentrotus lividus</i>) · 록세치누스 알버스(<i>Loxechinus albus</i>) · 애치누스 에스컬렌투스(<i>Echinus esculentus</i>)]	
		0308.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2	-- 냉동한 것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9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30	- 해파리 [로필레마 (<i>Rhopilema</i>) 속]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90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9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렛 (pellet)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9.10	- 어류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9.90	- 기타	그 소호 내의 훈제되지 않은 상품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서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 (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2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0402.9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요구르트, 버터밀크·옹고밀크와 옹고크림·케피어 (kef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20	- 요구르트	쌀을 함유한 요구르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요구르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테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 버터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20	– 테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5.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6.90	– 그 밖의 치즈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화용 수정란	
		0407.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신선란	
		0407.2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7.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알의 노른자위	
		0408.11	-- 건조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0408.91	-- 건조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8.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09	0409.00	천연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410		곤충과 그 밖의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10.10	– 곤충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는 제외한다)
		0410.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2단위 세번변경기준
		0505.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 [가공하지 않은 것, 틸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 골소(骨素)와 뼈 [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0506.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벳(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		파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 소의 정액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2단위 세번변경기준
		0511.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1류 및 제02류는 제외한다)
06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꺾꽂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 벼섯의 종균(種菌)	
	0602.10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 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 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	
	0603.11	--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 백합[릴리움(Lilium) 속]	완전생산기준
	0603.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 · 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 · 이끼 · 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 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 · 살롯(shallot) · 마늘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 살롯(shallot)	완전생산기준
	0703.20	-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 · 꽃양배추 · 콜라비(kohlrabi)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i>Lactuca sativa</i>)]와 치커리(chicory) [시커리엄(<i>Cichorium</i>)속]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상추	
		0705.11	--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치커리(chicory)	
		0705.21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 [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i>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i>)]	완전생산기준
		0705.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셀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 완두[파심 새티범(<i>Pisum sativum</i>)]	완전생산기준
		0708.20	- 콩[비그나(<i>Vigna</i>)속·파세룰스(<i>Phaseolus</i>)속]	완전생산기준
		0708.9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 셀러리(celery) [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i>Agaricus</i>)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2	-- 볼레투스(<i>Boletus</i>)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3	-- 칸타렐루스(<i>Cantharellus</i>)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4	--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완전생산기준
		0709.55	-- 송이버섯(<i>Tricholoma matsutake</i> , <i>Tricholoma magnivelare</i> , <i>Tricholoma anatolicum</i> , <i>Tricholoma dulciolens</i> , <i>Tricholoma caligatum</i>)	완전생산기준
		0709.56	-- 송로버섯[튜버(<i>Tuber</i>)속]	완전생산기준
		0709.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 고추류[캡시쿰(<i>Capsicum</i>)속]의 열매나 피멘타(<i>Pimenta</i>)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 기타	
		0709.91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 호박류[куку르비타(<i>Cucurbita</i>)속]	완전생산기준
		0709.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 감자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 완두[파심 새티범(<i>Pisum sativum</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22	-- 콩[비그나(<i>Vigna</i>) 속 · 파세러스(<i>Phaseolus</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30	- 시금치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40	- 스위트콘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80	- 그 밖의 채소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0.90	-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1.40	- 오이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i>Agaricus</i>) 속의 버섯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1.5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 양파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버섯, 목이버섯[오리큘라리아(<i>Auricularia</i>) 속], 젤리균류[트레멜라(<i>Tremella</i>) 속], 송로(松露)	
	0712.31	-- 아가리쿠스(<i>Agaricus</i>) 속의 버섯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32	-- 목이버섯[오리큘라리아(<i>Auricularia</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33	-- 젤리균류[트레멜라(<i>Tremella</i>)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34	--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3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2.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2단위 세변변경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 완두[파심 새티범(<i>Pisum sativum</i>)]	완전생산기준
	0713.20	- 이집트 콩[가반조스(<i>garbanzos</i>)]	완전생산기준
		- 콩[비그나(<i>Vigna</i>) 속 · 파세러스(<i>Phaseolus</i>) 속]	
	0713.31	-- 녹두[비그나 명고(엘) 헤파(<i>Vigna mungo</i> (<i>L</i>) <i>Hepper</i>) 종 ·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제(<i>Vigna radiata</i> (<i>L</i>) <i>Wilczek</i>) 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 팥[아주기(<i>Adzuki</i>)] [파세러스(<i>Phaseolus</i>) · 비그나 앵구리아스(<i>Vigna angularis</i>)]	완전생산기준
	0713.33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i>Phaseolus vulgaris</i>)]	완전생산기준
	0713.34	--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i>Vigna subterranea</i>) ·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i>Voandzeia subterranea</i>)]	완전생산기준
	0713.35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i>Vigna unguiculata</i>)]	완전생산기준
	0713.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i>Vicia faba var. major</i>)] 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i>Vicia faba var. equina</i>)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i>Vicia faba var. minor</i>)]	완전생산기준
		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i>Cajanus cajan</i>)]	완전생산기준
		071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 · 허뿌리 · 살렙(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렛(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 암[디오스코레아(<i>Dioscorea</i>) 속]	완전생산기준
		0714.40	- 토란[콜로카시아(<i>Colocasia</i>) 속]	완전생산기준
		0714.5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i>Xanthosoma</i>) 속]	완전생산기준
		071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헬론의 껍질	
	0801		코코넛 · 브라질너트 · 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코코넛	
		0801.11	--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 내피[내과피(内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브라질너트	
		0801.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아몬드	
		0802.1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 [코리루스(<i>Corylus</i>) 속]	
		0802.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 호두	
		0802.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 밤[카스타네아(<i>Castanea</i>) 속]	
		0802.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 껌데기를 벗긴 것 - 파스타치오(pistachio)	완전생산기준
		0802.51	-- 껌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 껌데기를 벗긴 것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완전생산기준
		0802.61	-- 껌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 껌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 콜라 너트(kola nut) [콜라(<i>Cola</i>) 속]	완전생산기준
		0802.80	-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 기타	
		0802.91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92	-- 잣(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 만다린(mandarin) [탄제린(tangerine) · 세트수미(satsuma)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 윌킹(wilking)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1	-- 만다린(mandarin) [탄제린(tangerine) · 세트수미(satsuma)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22	-- 클레멘타인(clementine)	완전생산기준
		0805.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와 포멜로(pomelo)	완전생산기준
		0805.50	- 레몬[시트러스 리몬(<i>Citrus limon</i>) · 시트러스 리미눔(<i>Citrus limonum</i>)] , 라임(lime) [시트러스 오란티풀리아(<i>Citrus aurantifolia</i>) · 시트러스 라티풀리아(<i>Citrus latifolia</i>)]	완전생산기준
		08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 포포(papaw) [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 · 배 · 마르멜로(quince)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 · 체리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자두 · 슬로(sloe)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 살구	완전생산기준
			- 체리	
		0809.21	-- 신체리 [프루너스 체라서스(<i>Prunus cerasus</i>)]	완전생산기준
		0809.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 와 그 밖의 박시니엄(<i>Vaccinium</i>) 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 초본류 딸기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 체리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0814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3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4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3	0903.00	마테(maté)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		후추[파이퍼(<i>Piper</i>)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쿰(<i>Capsicum</i>)속]의 열매나 페멘타(<i>Pimenta</i>)속의 열매	
			– 후추	
		0904.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고추류[캡시쿰(<i>Capsicum</i>)속]의 열매나 페멘타(<i>Pimenta</i>)속의 열매	
		0904.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0709.60호 또는 제0710.80호는 제외한다)
		0904.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0709.60호 또는 제0710.80호는 제외한다)
	0905		바닐라	
		0905.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5.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콤 블룸(<i>Cinnamomum zeylanicum Blume</i>)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6.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7	정향(丁香) (과실 · 꽃 · 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7.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 · 메이스(mace) · 소두구(小荳蔻)	
		- 육두구(肉荳蔻)	
	0908.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8.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메이스(mace)	
	0908.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8.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소두구(小荳蔻)	
	0908.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8.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9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회향(茴香) ·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 · 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9.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커민(cumin)의 씨	
	0909.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9.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캐러웨이(caraway) ·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09.6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10		생강 · 사프란(saffron) · 심황[강황(薑黃)]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생강	
	0910.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10.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10.20	- 사프란(saffron)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10.30	- 심황[강황(薑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향신료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0910.9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10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기타	
	1001.9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 쇠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 메밀	완전생산기준
			- 밀리트(millet)	
		1008.2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 포니오(Fonio) [디지타리아(Digitaria) 속]	완전생산기준
		1008.50	- 퀴노아(quinoa) [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분공업의 생产业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 한다]	
		1102.20	- 옥수수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렛(pellet)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3.13	-- 옥수수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3.20	- 펠릿(pellet)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4		1104.12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껌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빽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9	-- 귀리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껌질을 벗긴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빽은 것)	
		1104.22	-- 귀리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4.23	-- 옥수수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4.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4.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5		1105.10	감자와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는 제외한다)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는 제외한다)
1106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한다)
			-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한다)
			- 제8류 물품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 및 제08류는 제외한다)
1107		1107.10	백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볶지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 볶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		1108.11	전분과 이눌린(inulin)	
			- 전분	
			--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12	-- 옥수수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13	-- 감자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14	--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19	-- 그 밖의 전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8.20	- 이눌린(inulin)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109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 (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다)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껌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 종자	완전생산기준
			- 기타	
		1202.41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 팜너트(palm nut) 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 목화씨	
		1207.2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70	-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 기타	
		1207.91	--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거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 대두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1208.90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1209.10	-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 루우산(lucerne) (알풀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 클로버(clover) [트리폴리엄(<i>Trifolium</i>) 속]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 [포아프래 텐시스 엘(<i>Poa pratensis L.</i>)]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 [로리엄 멀티플로럼 (<i>Lolium multiflorum Lam</i>) · 로리엄 페레네 엘(<i>Lolium perenne L.</i>)]	완전생산기준
	1209.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 기타	
	1209.91	--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렛(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풀린(lupulin)	
	1210.10	- 홉(hop) [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렛(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1210.20	- 홉(hop) [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렛(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풀린(lupulin)	2단위 세변변경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50	- 마황(麻黃)	완전생산기준
	1211.60	- 아프리카 체리(<i>Prunus africana</i>) 나무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121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 ·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활용품 [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벌(<i>Cichorium intybus sativum</i>)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 기타	

		1212.91	--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 (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웨드(swede) · 맹글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 (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 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 루우산(lucerne) (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2단위 세번변경기준	
	121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		락(lac), 겸·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겸·수지·겸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밸삼(balsam)]		
	1301.20	- 아라비아 겸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 아편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 감초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 흑(hop)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4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는 제외한다)	
	1302.2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 한천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 대나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20	- 등나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		파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 면(綿) 런터(lin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5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 라드(l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1.2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2	소·면양·염소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 텔로우(tallow)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3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4.3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5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란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6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30	- 버진 올리브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40	-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10	-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2.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 조유(粗油) [고시풀(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2.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3.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3.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4.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1514.9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4.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 조유(粗油)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6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	

		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6.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6.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7.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18	1518.00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20	1520.00	글리세롤(glycerol)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21		식물성 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 왁스·고래 왁스(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 식물성 왁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2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1522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1601	1601.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 칠면조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32	-- 닭[Gallus domesticus] 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3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돼지로 만든 것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50	- 소로 만든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3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 연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2	-- 청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3	--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 브리스링(brisling) · 스프랫(sprat)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4	-- 다랑어 · 가다랑어 · 베니토(bonito) [사르다(Sarda) 속]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5	-- 고등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6	-- 멸치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7	-- 뱀장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8	-- 상어 지느러미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1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물	
	1604.31	-- 캐비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4.32	-- 캐비어 대용물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 게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새우류	
	1605.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30	- 바닷가재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연체동물	
	1605.51	-- 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3	-- 홍합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5	-- 문어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7	-- 전복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5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 해삼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62	-- 성게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63	-- 해파리	2단위 세변변경기준
	1605.6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17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당(粗糖)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 사탕무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3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1701.91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당류(糖類)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 시럽 	
	1702.11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 [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2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		<u>당밀(糖蜜)</u>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1803.00 코코아 페이스트(paste) [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5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2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별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19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
	19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이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노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 새의 알을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 쿠스쿠스(couscous)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낱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 불거 밀(bulgur wheat)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6호는 제외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 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 귀리빵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	-- 스위트 비스킷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 와플과 웨이퍼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 오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벼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벼섯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40	- 완두[괴섬 새티움(<i>Pisum sativum</i>)]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콩[비그나(<i>Vigna</i>) 속 · 패세러스(<i>Phaseolus</i>) 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 올리브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i>Zea mays var. saccharata</i>)]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 균질화한 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2007.91	-- 감귤류의 과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 · 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 땅콩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 파인애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 감귤류 과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40	- 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 살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 체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 초본류 딸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 팜 하트(palm heart)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пон(<i>Vaccinium macrocarpon</i>)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i>Vaccinium oxycoccus</i>)] , 렁꼰베리(lingonberry)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i>Vaccinium vitis-idaea</i>)]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7	--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 ·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오렌지주스	
	2009.11	-- 냉동한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	
	2009.2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파인애플주스	
	2009.4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4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50	- 토마토주스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사과주스	
		2009.7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채소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пон (<i>Vaccinium macrocarpon</i>)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i>Vaccinium oxycoccus</i>)] 주스, 링콘베리 (lingonberry)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i>Vaccinium vitis-idaea</i>)] 주스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 혼합 주스	2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 ·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101.12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2101.30	-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 (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 활성 효모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 간장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35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22			음료·주류·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 광천수와 탄산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2202.91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2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2203	2203.00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2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9	-- 기타
		2204.30	- 그 밖의 포도즙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5.90	- 기타
	2206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7.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중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중류주
		2208.30	- 위스키류
		2208.4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208.50	- 진(gin)과 제네바(geneva)
		2208.60	- 보드카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2208.90	- 기타
	2209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설육(脣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 육이나 설육(脣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 밀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벼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종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 비트펄프(beet-pulp), 벼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 양조하거나 종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유채(rapes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se, colza)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7	2307.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30	- 담배 부산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t) · 시가릴로(cigarillo) · 퀄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t) · 시가릴로(cigarillo) (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 퀄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2403.91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		담배 · 재구성한 담배 · 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 ·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2404.11	--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12	--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2404.91	-- 경구(經口)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92	-- 피부 투여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 석회 · 시멘트	
	2501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 흑연	
		2504.1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 규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 석영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 규암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 규선석(硅線石) [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파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 벤토나이트(bentoni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30	- 내화(耐火) 점토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40	- 그 밖의 점토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50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 · 규선석(硅線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60	- 멀라이트(mulli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8.70	- 샤파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09	2509.00	초크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0		천연 인산칼슘 ·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0.20	- 잘게 부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1.2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2	2512.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 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결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 부석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3.2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4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5		대리석 · 트래버린(travertine)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결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희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5.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5.2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희석고(alabast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화강암	
	2516.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6.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6.20	- 사암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6.90	-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7.2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7.30	-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 대리석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7.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煅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8.10	- 하소(煅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8.20	- 하소(煅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19.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煅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0.20	- 플라스터(plast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1	2521.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 생석회(生石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2.20	- 소석회(消石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2.30	- 수경성(水硬性) 석회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3.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3.9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 청(青)석면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시트(sheet)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5.20	- 운모 가루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5.30	- 운모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6		천연 동석(凍石)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6.2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8	2528.00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 [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 장석(長石)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형석(螢石)	
		2529.21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9.22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29.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단위 세변변경기준
		2530.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 [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 응결시키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1.12	-- 응결시킨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1.2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2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4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5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6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7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8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09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0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1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2.20	- 토륨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 배소(焙燒)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4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 은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7.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8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 [슬래그 샌드(slag sand)]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19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		슬래그(slag), 흑(灰), 잔재물(금속 · 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3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4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2620.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0.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621.1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62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		광물성 연료 · 광물유(礦物油)와 이들의 종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		
		<p>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 이란 문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침가 또는 제거</p> <p>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문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p>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 무연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1.12	-- 유연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1.19	-- 그 밖의 석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1.2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색은 제외한다)	
		2702.1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2.20	- 응결시킨 갈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3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4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 갈탄 ·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05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06	2706.00	석탄·갈탄·토탄을 종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종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종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 벤조올(벤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7.20	- 톨루올(톨루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7.30	- 크실롤(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7.40	- 나프탈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7.5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중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 기타	
		2707.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 피치(pitch)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 피치코크스(pitch co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 변경된 것(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1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 변경된 것(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 변경된 것(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Ps)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 변경된 것(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10.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제2710호로부터 변경된 것(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변경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액화한 것	
	2711.11	-- 천연가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1.12	-- 프로판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1.13	-- 부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1.14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1.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가스 상태인 것	
	2711.21	-- 천연가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1.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712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 석유젤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2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 석유코크스	
	2713.11	-- 하소(煅燒)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 하소(煅燒)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 석유역청(瀝青)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		천연의 역청(瀝青) ·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	2715.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	2716.00	전기에너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稀土類)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 규정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그러한 화학반응이 양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문맥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반응” 규정은 위의 류에 분류된 어떠한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 이란 문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p>규칙 2. 정제 원산지 규정</p> <p>제28류부터 제35류까지와 제38류의 목적상, 정제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정제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정제의 결과로 기존 불순물의 함량 대비 80퍼센트의 불순물이 제거된 경우, 또는</p> <p>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적용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p>규칙 3. 혼합 및 배합 원산지 규정</p> <p>제30류 및 제31류, 제3302호, 소호 제3502.20호, 제3506호부터 제3507호까지, 제3707호 및 제3822호의 목적상,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 재료와는 상이하고,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p>	
	<p>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원산지 규정</p> <p>제30류 및 제31류, 그리고 제3822호의 목적상,</p> <p>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 크기의 축소[단순 분쇄(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 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p> <p>나.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 크기의 변형(단순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의된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 재료와는 상이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이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p>	
	<p>규칙 5. 표준물질 원산지 규정</p> <p>제28류부터 제32류까지와 제35류 및 제38류의 목적상, 표준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 (표</p>	

		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하여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원산지 규정 제28류부터 제32류까지와 제35류 및 제3822호의 목적상,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칙 7. 분리 금지 비원산지 물질/구성요소는 인조혼합물에서 단순히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분리한 결과로서 세번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칙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리된 물질/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또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어야 한다.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1.10	– 염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 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 플루오르와 브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	2802.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3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 수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희가스(rare gas)	
	2804.21	-- 아르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 질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 산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 봉소와 텔루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규소	
	2804.61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 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 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 셀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 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 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 수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 염화수소(염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06.20	- 클로로황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07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08	2808.00	질산과 황질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 오산화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09.20	- 인산과 폴리인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0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그 밖의 무기산	
	2811.11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1.12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1.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 이산화탄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1.22	-- 이산화규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1.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2812.11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2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3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4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5	-- 살퍼 모노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6	-- 살퍼 디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7	-- 티오닐 클로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2.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 이황화탄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3.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 무수(無水)암모니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14.20	- 암모니아수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 고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5.12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5.2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5.3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6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 과산화물	
	2816.1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6.4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7	2817.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 인조 커런덤(corundum)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8.2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8.30	- 수산화알루미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 삼산화크로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19.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 이산화망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0.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1		산화철 · 수산화철 · 어스컬러(earth colour)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 산화철과 수산화철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1.20	- 어스컬러(earth colour)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2	2822.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23	2823.00	산화티타늄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24		산화납 · 연단(鉛丹) · 오렌지납	
	2824.1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4.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2825.10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2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3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4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5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6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7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80	- 산화안티모니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826.12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6.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6.3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冰晶石)]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6.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10	- 염화암모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20	- 염화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염화물	
	2827.31	-- 마그네슘 염화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32	-- 알루미늄 염화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35	-- 니켈 염화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4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5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7.6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8.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829.11	-- 염소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9.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29.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 황화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0.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1.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 아황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2.20	- 그 밖의 아황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2.30	- 티오황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2833.11	-- 황산이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황산염	
	2833.21	-- 황산마그네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22	-- 황산알루미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24	-- 황산니켈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25	-- 황산구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27	-- 황산마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30	- 명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3.4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 아질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질산염	
		2834.21	-- 질산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4.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835.1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인산염	
		2835.22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24	-- 인산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26	-- 그 밖의 인산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폴리인산염	
		2835.31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5.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bam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 탄산이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3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40	- 탄산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50	- 탄산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60	- 탄산바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2836.91	-- 탄산리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92	-- 탄산스트론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6.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7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 · 시안착염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7.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7.20	- 시안착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규산나트륨	
	2839.11	-- 메타규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9.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39.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0		봉산염과 과산화봉산염(과봉산염)	
		- 사봉산이나트륨[정제봉사(精製硼砂)]	
	2840.11	-- 무수물(無水物)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0.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0.20	- 그 밖의 봉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0.30	- 과산화봉산염(과봉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 중크롬산나트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5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61	-- 과망간산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6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70	- 몰리브덴산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8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1.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도화물을 제외한다]	
	2842.1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2.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 콜로이드 귀금속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은 화합물	
	2843.21	-- 질산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3.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3.30	- 금 화합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3.9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다), 합금·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잔재물	
		2844.41	--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42	-- 악티늄-225 · 악티늄-227 · 캘리포늄-253 · 퀴륨-240 · 퀴륨-241 · 퀴륨-242 · 퀴륨-243 · 퀴륨-244 · 아인슈타이늄-253 · 아인슈타이늄-254 · 가돌리늄-148 · 폴로늄-208 · 폴로늄-209 · 폴로늄-210 · 라듐-223 · 우라늄-230 · 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44	-- 방사성 잔재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4.50	- 핵반응로에서 사용 [조사(照射)] 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5.20	- 봉소-10을 농축한 봉소와 그 화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5.30	-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5.40	- 헬륨-3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6			희토류(稀土類) 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를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6.10	- 세륨화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7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 탄화칼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9.20	- 탄화규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49.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850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52.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10	- 시아노젠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4단위 세변변경기준
	285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 에틸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1.22	-- 프로펜(프로필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1.23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1.24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1.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2.11	-- 시클로헥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20	- 벤젠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30	- 톨루엔	6단위 세변변경기준
		- 크실렌	
	2902.41	-- 오르토-크실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42	-- 메타-크실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43	-- 파라-크실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44	-- 혼합크실렌이성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50	- 스티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60	- 에틸벤젠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70	- 큐멘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2.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14	-- 사염화탄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15	-- 이염화에틸렌(ISO) (1,2-이염화에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22	-- 삼염화에틸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23	-- 사염화에틸렌(파염화에틸렌)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4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2	-- 디플루오로메탄(HFC-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3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4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6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7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8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 (1,2-디브로모에탄)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6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7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페할로겐화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 그 밖의 페할로겐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82	-- 앤드린(ISO), 클로르덴(ISO), 햅타클로르(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83	-- 미렉스(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8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92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93	-- 펜타클로로벤젠(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94	-- 헥사브로모비페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3.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2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904.31	-- 과불화옥탄술폰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32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33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34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35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36	--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2904.91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4.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 1가알코올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4	-- 그 밖의 부탄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포화 1가알코올	
		2905.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2가알코올	
		2905.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05.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 2-에틸-2-(하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 펜타에리트리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3	-- 만니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 글리세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 에스클로비톨(INN)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6.11	-- 멘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2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3	-- 스테롤과 이노시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방향족(芳香族)	
		2906.21	-- 벤질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 1가페놀	
		2907.11	-- 페놀(석탄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 크레졸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 나프톨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 레조르시놀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2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 4,4'-이소프로필리텐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 펜타클로로페놀(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2908.91	-- 디노셉(ISO)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2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ISO)] 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파산화알코올 · 파산화에테르 · 파산화아세탈과 파산화헤 미아세탈 · 파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활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 디에틸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3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 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 파산화알코올 · 파산화에테르 · 파산화아세탈과 파산화 헤미아세탈 · 파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 디엘드린(ISO, INN)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50	- 엔드린(ISO)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1	2911.00	아세탈 ·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 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 비활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2912.21	-- 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 기타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 · 알데히드-페놀 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1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 파라포름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3	2913.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2914.11	-- 아세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 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2914.31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4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퀴논	
		2914.61	-- 안트라퀴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2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 로소화유도체	
		2914.71	-- 클로르데콘(ISO)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 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 포름산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 포름산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 포름산의 에스테르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21	-- 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24	-- 무수(無水)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29	-- 기타 - 초산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31	-- 초산에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32	-- 초산비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33	-- 초산노르말부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36	-- 초산디노셉(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4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5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60	-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70	-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5.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11	-- 아크릴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5	--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6	-- 비나파크릴(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34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6.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12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13	-- 아젤라산·세마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14	-- 무수말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20	<p>-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p> <p>-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p>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3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4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5	-- 무수프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6	-- 태레프탈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7	-- 태레프탈산디메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7.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			<p>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슬픈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p> <p>-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p>	
		2918.11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2	-- 타르타르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3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4	-- 시트르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5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6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7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8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p>- 폐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p>	
		2918.21	-- 살리실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22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23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30	<p>-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p> <p>- 기타</p>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91	-- 2,4,5-티(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8.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 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 온)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슬 픈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 디메틸 포스파이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22	-- 디에틸 포스파이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23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24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30	- 엔도설판(ISO)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활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2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3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4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활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 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 아닐린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 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데스암페타민 (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 (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 (INN),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9	-- 기타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1.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1.5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4	--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5	-- 트리에탄올아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6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7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8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미노나프톨 · 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42	-- 글루탐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43	-- 안트라닐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44	-- 틸리딘(INN)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4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2.50	-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 콜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3.2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3.3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3.4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테실디메틸암모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3.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비활식아미드(비활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 메프로바메이트(INN)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23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24	-- 에치나메이트(INN)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25	-- 알라클로르(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4.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아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 사카린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5.12	-- 구루테치미드(INN)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5.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 클로르디메포름(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5.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 아크릴로니트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6.2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6.30	- 펜프로포렉스(INN) 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6.4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6.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7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28	2928.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29.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10	- 2-(엔,엔-디메틸아미노) 에탄티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2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30	- 티우람모노솔파이드 · 티우람디솔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솔파이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40	- 메티오닌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6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7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솔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8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0.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비활로젠향 유기인 유도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4	-- 메틸포스폰산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5	--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아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파 난-2,4,6-트리옥사이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파 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 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49	-- 기타 - 할로젠향 유기인 유도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 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54	-- 트리클로르포(ISO)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5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 테트라히드로푸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12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13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14	-- 수크랄로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20	- 락톤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1	-- 이소사프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2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3	-- 피페로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4	-- 사프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5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6	-- 카보퓨란(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2.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2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 피리딘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2	-- 피페리딘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앤이 · 펜사이클리딘(INN) (PCP) · 페노페리딘(INN) · 페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5	-- 3-퀴뉴클리디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6	--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7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3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 레보파놀(INN)과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4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셱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54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55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콰론(INN) · 메타콰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5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 멜라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6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 락탐	
		2933.71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72	-- 클로마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79	-- 그 밖의 락탐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2933.91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 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멜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루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론(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92	-- 아진포스-메틸(ISO)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3.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4.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4.3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2934.91	--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4.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4.9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			술폰아미드	
		2935.1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2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3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4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5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22	-- 비타민 B ₁ 과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23	-- 비타민 B ₂ 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25	-- 비타민 B ₆ 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변변경기준

		2936.26	-- 비타민 B ₁₂ 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8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9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 인슐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3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8.1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부프레노르핀(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모르폰(INN) · 모르핀 · 니코모르핀(INN) · 옥시코돈(INN) · 옥시모르폰(INN) · 폴코딘(INN) · 테바콘(INN) · 테바인,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30	- 카페인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 카틴(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테오피린 ·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 페네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 엘고타민(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 리세르그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2	-- 코카인 · 액고닌,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0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 · 제2938호 ·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50	–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오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오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51	-- 세포치료법용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4.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50	-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는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1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 구급상자와 구급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7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gel)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3006.91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 폐(廢)의료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3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1		비료	
	3101	3101.00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혼합물	
		- -- 황산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 질산나트륨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협염과 혼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과인산석회	
		3103.11	--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 염화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 황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폐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 케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 합성 유기유연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3	3203.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페(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8	--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5	3205.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포(phot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 군청(群青)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 ·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0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1	3211.00	조제 드라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템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 스템프용 박(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 세트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용 잉크	
	3215.11	-- 흑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3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concrete)와 앱솔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 · 불휘발성유 · 액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정유(essential oil) (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 오렌지유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 레몬유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정유(essential oil) (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	향수와 화장수	4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 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4.20	- 눈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4.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304.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4.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 샴푸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5.2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5.30	- 헤어 래커(hair lacqu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6.2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 면도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7.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7.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7.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307.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1.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1.2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1.3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31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1	-- 양이온성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42	-- 비이온성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50	- 소매용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2.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착제·블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3.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403.9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3.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3405.2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3405.3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3405.4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단위 세변변경기준
	3405.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406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407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 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 (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 ·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 카세인(casein)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1.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 건조한 것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2.19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2.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3	3503.00	겔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04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 (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겔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5.20	- 글루(glue)	6단위 세변변경기준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506.91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06.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3507.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1.00	화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3.10	- 도화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20	- 도폭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40	- 뇌관(detonating c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50	- 점화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60	- 전기뇌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 불꽃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	3605.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 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 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 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 액화가스 연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 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 엑스선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702호는 제외한 다)
		3701.2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3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 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3701.9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 엑스선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701호는 제외한 다)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 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2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7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 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41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42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43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44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53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54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55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56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702.96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97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2.98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3			사진 인화지 · 판지 ·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 룰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3.2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4	3704.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5	3705.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 · 글루(glue) ·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 감광유제	6단위 세변변경기준
		3707.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 인조흑연	6단위 세변변경기준
		3801.2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단위 세변변경기준
		3801.3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단위 세변변경기준
		3801.90	- 기타	6단위 세변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 [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 활성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	톨유(tall oil) (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4	목재열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슬픈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 (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파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 로진(rosin)과 수지산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2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 [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07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 · 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밀아역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 (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3808.52	--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물품	
	3808.61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62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6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3808.91	-- 살충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 살진균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 소독제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 · 제지산업 · 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809.91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09.92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09.93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땜질용 ·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 · 땜질용 ·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땜질용 ·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10.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11		안티녹(anti-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811.19	-- 기타 - 윤활유 첨가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1	--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31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 엠큐)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단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폐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2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랜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8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19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 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 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22.11	-- 말라리아용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2.12	--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 속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2.13	-- 혈액형 분류용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2.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 스테아린산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 올레인산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 툴유(tall oil) 지방산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30	-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4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5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 소르비톨(sorbitol) (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의 물품	
	3824.81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2	--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 (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4	-- 앤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 [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5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6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7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8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9	--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1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 메틸 메틸 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2	--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 생활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20	- 하수 찌꺼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30	- 감염성 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폐유기용제	
	3825.41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1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2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3827.1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13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14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31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32	--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3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40	-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s)를 함유한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5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7.61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2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3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4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5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8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6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827.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 폴리프로필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20	- 폴리이소부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스티렌	
		3903.11	-- 발포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젠판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22	-- 가소화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4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50	- 염화비닐리텐 중합체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6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초산비닐)	
		3905.12	--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5.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5.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5.30	- 폴리(비닐알코올) [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3905.91	-- 공중합체(共重合體)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5.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폴리에테르	
		3907.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7.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7.30	- 에폭시수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07.50	- 알키드수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70	- 폴리(락트산)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1	-- 불포화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20	- 멜라민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31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앤디아이, 중합 앤디아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 페놀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 폴리우레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솔파이드·폴리슬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 가소화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	3914.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폐어링 (paring) · 스크랩 (scrap)	
	3915.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2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3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막대(rod, stick) · 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2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 · 파이프 ·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3917.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 (gut)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경질(硬質)의 관 · 파이프 · 호스	
	3917.21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3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관 · 파이프 · 호스	
	3917.31	--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 연결구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둘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테이프 · 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둘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 둘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5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폴리카보네이트 · 알카드수지 · 폴리아릴 에스테르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63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6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73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79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92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93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94	-- 폐놀수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0.9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스트립	
			- 셀룰러	
		3921.11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12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14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대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2.2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2.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 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30	-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40	- 스플(spool) · 콥(cop) · 보빈(bobbin) 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50	-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5.2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5.30	-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5.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3926.1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6.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6.30	-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6.4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392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 · 밸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율(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1.22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1.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1.30	- 밸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율(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 라텍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	
		4002.31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 라텍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크릴로나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 라텍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5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60	- 이소프렌 고무(I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8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002.91	-- 라텍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2.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3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4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5.2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005.9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5.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 · 판 ·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 · 링)	
	4006.1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6.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7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8		고무로 만든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막대(rod) · 형재(形材)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8.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8.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9		고무로 만든 판 · 파이프 ·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9.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9.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9.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09.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12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31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 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2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 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3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 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4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 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5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6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0.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웨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30	- 항공기용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40	- 모터사이클용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50	- 자전거용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7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8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 재생타이어	
	4012.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웨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 버스용·화물자동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3	-- 항공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웨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20	- 자전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 콘돔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4016.91	-- 바닥깔개와 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 지우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5	-- 그 밖의 공기주입식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017	4017.00	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경질고무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털을 제거한 것	
		4102.21	-- 산처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 파충류의 원피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 돼지의 원피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4104.41호는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3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염소의 원피	
		4106.2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돼지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1	-- 습윤 상태의 것 [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40	- 파충류의 원피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습윤 상태에서 건조 상태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4106.91	-- 습윤 상태의 것 [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유연처리 ·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 (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전신 가죽	
		4107.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2	4112.00	유연처리 ·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 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 (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		유연처리 ·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 염소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 돼지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 파충류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새미가죽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 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새미가죽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달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별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꾀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불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2.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 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장갑, 병어리장갑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3.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3.30	- 벨트와 띠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3.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5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4206	4206.00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 전(腱)의 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제4102호 ·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 링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1.30	- 어린 양의 것 [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풀(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1.6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1.8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1.9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 링크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2.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2.2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2.3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304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펠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칡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텁跛 ·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 ·	

		브리퀴트(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11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1.12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1.22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텁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 · 브리켓(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401.31	-- 목재 펠릿(pellet)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1.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1.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텁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401.41	-- 텁밥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1.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2.20	-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2.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 ·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뜯 것인지에 상관없다]	
		- 폐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12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 소나무[피너스(<i>Pinus</i>)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22	-- 소나무[피너스(<i>Pinus</i>)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i>Abies</i>)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i>Picea</i>)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24	-- 전나무[아비에스(<i>Abies</i>)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i>Picea</i>)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25	-- 기타(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26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42	-- 티크(Teak)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4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403.91	-- 참나무[코커스(<i>Quercus</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i>Fagus</i>) 속]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4	-- 너도밤나무[파구스(<i>Fagus</i>) 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i>Betula</i>) 속]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6	-- 자작나무[베틀라(<i>Betula</i>) 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풀러스(<i>Populu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8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i>Eucalyptu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3.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 [지팡이 · 산류(傘類) · 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 · 휙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4.20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5	4405.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반침목(크로스타이)	
		– 주약처리(im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6.12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406.91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6.92	-- 활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폐질 · 연마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침엽수류	
	4407.11	-- 소나무[피누스(<i>Pinu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12	-- 전나무[아비에스(<i>Abies</i>) 속] 및 가문비나무[피세아(<i>Picea</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13	-- 에스-피-에프(S-P-F) [가문비나무(피세아(<i>Picea</i>) 속), 소나무(피누스(<i>Pinus</i>) 속)와 전나무(아비에스(<i>Abie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14	-- 햄퍼(Hem-fir) [웨스턴 햄록(Western hemlock) (트수가 헤테로필라(<i>Tsuga heterophylla</i>))과 전나무(아비에스(<i>Abie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7.21	-- 마호가니(Mahogany) [스웨테니아(<i>Swietenia</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2	--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a) · 발사(Balsa)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3	-- 티크(Teak)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7	-- 사펠리(Sapelli)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8	-- 이로코(Iroko)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407.91	-- 참나무[코카스(<i>Quercus</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2	-- 너도밤나무[파구스(<i>Fagus</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3	-- 단풍나무[아세르(<i>Acer</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4	-- 체리나무[프루누스(<i>Prunus</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i>Fraxinus</i>) 속]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6	-- 자작나무[베틀라(<i>Betula</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풀러스(<i>Populus</i>) 속]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7.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틈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 연마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8.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8.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8.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 마구리 ·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 흄가공 · 은총이음가공 · 경사이음가공 · 브이형이음가공 · 구슬형가공 · 주형가공 · 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 연마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 침엽수류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활엽수류	
		4409.2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9.22	-- 열대산 목재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09.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 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목재로 만든 것	
		4410.11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0.12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0.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1.13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1.14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411.92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1.93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1.94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33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i>Alnus</i>) 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i>Fraxinus</i>) 속]·너도밤나무[파구스(<i>Fagus</i>) 속]·자작나무[베틀라(<i>Betula</i>) 속]·체리나무[프루누스(<i>Prunus</i>) 속]·밤나무[카스타네아(<i>Castanea</i>) 속]·느릅나무[울무스(<i>Ulmus</i>) 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i>Eucalyptus</i>) 속]·히커리[카르야(<i>Carya</i>) 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i>Aesculus</i>) 속]·라임[틸리아(<i>Tilia</i>) 속]·단풍나무[아서(<i>Acer</i>) 속]·참나무[코커스(<i>Quercus</i>) 속]·버즘나무[플라타너스(<i>Platanus</i>) 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풀러스(<i>Populus</i>) 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i>Robinia</i>) 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i>Liriodendron</i>) 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i>Juglans</i>) 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34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3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단판적층재(LVL)	
		4412.4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4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4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5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5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5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9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9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2.9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3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4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1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5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 목재로 만든 팰럿(pallet), 박스팰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럿칼러(pallet collar)		
		4415.1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5.20	- 팰럿(pallet)·박스팰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럿칼러(pallet colla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6	4416.00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7	4417.00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페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418.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문·문틀·문지방	
		4418.2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30	-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4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50	- 지붕을 이는 판자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3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74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75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7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구조용 공학목재	
		4418.81	-- 집성재[글루램(glulam)]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82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83	-- 아이빔(I beam)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89	-- 기타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9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8.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9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대나무로 만든 것	
		4419.11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9.12	-- 젓가락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9.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9.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19.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 장식용품, 칼불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0.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 옷걸이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1.20	- 판(棺)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421.9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421.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 코르크(cork)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 천연 코르크(cork)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2	4502.00	천연 코르크(cork) [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 마개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3.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4		옹결 코르크(cork) (옹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와 옹결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504.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 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 · 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1.22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1.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601.92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1.93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1.94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1.9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2.12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2.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602.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펠프, 희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4701.00 기계목재펠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2	4702.00 화학목재펠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펠프(소다펠프나 황산펠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3.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3.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펠프(아황산펠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4.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4.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5	4705.00 기계펠프공정과 화학펠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펠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펠프	
	4706.10	- 면 린터 펠프(cotton linters pulp)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6.2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6.3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4706.91	-- 기계펄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6.92	-- 화학펄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6.93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펠프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7.2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7.3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4707.9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펠프·종이·판지의 제품	
	4801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 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편치카드와 편 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 기와는 관계없이 룰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手製) 종 이와 판지	
		4802.10 -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2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40 - 벽지용 원지(原紙)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55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56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 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57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58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2.6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3	4803.00	화장지 · 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 · 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 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 (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를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모양이나 시트 (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19	-- 기타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2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2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3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3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4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4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49	-- 기타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5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5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4.5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를 모양이나 시트 (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플루팅지 (fluting paper)	
		4805.11	-- 반화학 플루팅지 (fluting pap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12	-- 스트로 플루팅지 (straw fluting pap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19	-- 기타 - 테스트라이너(testliner) (재생라이너판)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2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25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30	- 아황산포장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40	- 여과지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50	- 펠트지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5.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6			황산지 · 내지지(耐脂紙)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 황산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6.20	- 내지지(耐脂紙)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6.3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6.4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7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룰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 (영지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8.4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8.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룰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 셀프복사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09.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 표면장식 ·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룰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룰 모양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14	--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겹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0.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1		<p>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크기와는 관계없이 를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p>	
	48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지와 판지 	
	48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접착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스·파라핀와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2	4812.00	제지용 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3		겔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투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책자 모양이나 투브 모양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이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복사지 	4단위 세변변경기준 (제4809호는 제외한다)

		481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809호는 제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 (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 봉투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3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를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스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페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 화장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 책상보와 서비스에트(serviet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3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5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풀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 연습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풀더·서류철 표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5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 인쇄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펠프 · 종이 ·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 · 스플(spool) · 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테에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펠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룰 · 시트(sheet) · 다이얼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 제지용 펠프로 만든 몰드 · 프레스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 · 타자문서 ·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4901.91	-- 사전 ·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 · 잡지 ·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 · 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 벽걸이용의 것 ·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20	– 책자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6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 공학용 · 공업용 · 상업용 · 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카본복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 · 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템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 · 주권 ·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09	4909.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4911.91	-- 서화·디자인·사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			견	
	5001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	5002.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	5003.00	견 웨이스트(waste) [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5006.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004호 또는 제5005호는 제외한다)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 견 노일(noil)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90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리지(greasy) [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30	- 탄화처리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20	- 동물의 거친 털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3.3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4	5104.00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5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 카드(card)한 양모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5.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5.3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5.4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6.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7.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 카드(card)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8.20	- 코움(comb)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09.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10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1.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1.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1.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1.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		면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 [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5202.91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 소매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6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7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5.48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2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제5205호 또는 제5206호는 제외한다)
	520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제5205호 또는 제5206호는 제외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직물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한 것 	
	520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직물의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색한 것 	

		5208.31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32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3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42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4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날염한 것	
		5208.51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52	-- 평직물(平織物)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8.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표백한 것	
		5209.2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2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염색한 것	
		5209.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42	-- 데님(denim)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날염한 것	
		5209.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09.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표백한 것	
	5210.2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염색한 것	
	5210.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날염한 것	
	5210.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0.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20	-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염색한 것	
	5211.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42	-- 데님(denim)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날염한 것	
	5211.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1.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	그 밖의 면직물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5212.1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12	--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13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1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15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초과인 것	
	5212.2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22	--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23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2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212.25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단위 세변변경기준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1.2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1.3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 생대마나 침지(沈漬) 대마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2.90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韌皮)섬유[아마 · 대마 ·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韌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3.90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5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 단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6.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韌皮)섬유사	
	5307.10	- 단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7.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	- 코이어(coir)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8.20	- 대마사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8.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9.1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09.2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韌皮)섬유의 직물	
		5310.10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10.90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5311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1.2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11	-- 아라미드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1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 텍스처드사	
		5402.3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32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33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34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39	-- 기타	2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 탄성사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45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46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47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48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변변경기준

		5402.49	-- 기타 -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3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 기타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3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실(단사)	
		5403.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 기타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1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모노필라멘트	
		5404.11	-- 탄성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2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3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4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4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5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5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5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69	-- 기타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7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7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7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8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8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8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	
	5407.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9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7.9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2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24	-- 날염한 것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32	-- 염색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408.34	-- 날염한 것	4단위 세변변경기준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1.11	--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1.19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1.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1.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1.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1.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2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1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2.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 아라미드(aramid)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19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3.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4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504.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4.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합성섬유의 것	
		5505.10	- 합성섬유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5.2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6.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6.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6.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6.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6.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7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8.2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 단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 단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2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 단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3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 단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4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5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53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6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6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실	
		5509.9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9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09.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 단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0.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0.2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0.3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0.90	- 그 밖의 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1.30	- 재생·반(半) 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509 호 또는 제 5510 호는 제외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5512.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과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염색한 것	
	5513.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날염한 것	
	5513.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 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과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염색한 것	
	5514.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 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과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3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날염한 것	
	5514.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 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과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9	–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 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	
	5515.9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2	–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4	–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2	--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4	--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2	--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4	--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2	--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4	--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5516.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2	--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4	--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	펠트(felt)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펠트(felt)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2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3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4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5603.91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2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3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4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5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6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이잘(sisal)이나 아가베(Agave) 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2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 제품으로 된 어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9	5609.00		실·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폴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50	- 기타[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파일(pile)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703.21	-- 인조잔디(turf)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2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3.31	-- 인조잔디(turf)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3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폴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4.20	- 타일(tile) (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 초과 1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4.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제 5602 호는 제외한다)
	5705	5705.00	그 밖의 양단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 · 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면으로 만든 것	
		5801.2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2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2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26	--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27	--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3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3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36	--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37	--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1.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2.2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2.30	-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3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 뮐(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4.3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5	5805.00	고블랭(gobela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5806	세폭(細幅) 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 직물(볼더)	
	5806.10	- 파일(pile) 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 직물], 셔닐(chenil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직물	
	5806.3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4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 직물(볼더)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슬·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자수천	
	5810.91	--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9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램(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1.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2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20	-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5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5906.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7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8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9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0	591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제 8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2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2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4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001.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40	- 재생·반(半) 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	경(經)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것	
	6005.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2	--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4	--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5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6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7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8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9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재생 · 반(半) 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2	--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3	-- 서로 다른 색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4	--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면으로 만든 것	
	600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2	--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3	-- 서로 다른 색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4	--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2	--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3	-- 서로 다른 색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4	--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재생 · 반(半) 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2	--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3	-- 서로 다른 색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4	--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양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 슈트 - 양상블(ensembl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1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양상블(ensemble)	
		6104.2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드레스	
		61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4	-- 재생·반(半) 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 (breeches) · 반바지 (short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 (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언더팬츠와 브리프 (briefs)	
		6107.1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 (petticoat) · 브리프 (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 (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슬립과 페티코트 (petticoat)	
		61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브리프 (briefs)와 팬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108.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			저지(jersey) · 폴오버(pullover) · 카디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2	--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트랙슈트	
		6112.1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20	-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3	6113.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테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테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테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4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5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6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80	-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90	-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3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3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3.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양상블(ensemble)	
		6203.2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6204.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양상블(ensemble)	
		6204.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드레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스커트와 치마바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3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s)·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s)	
		6207.1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207.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s)·팬티·나이	

		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208.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20	- 그 밖의 의류(제 6201 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30	- 그 밖의 의류(제 6202 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4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5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 수영복	
	6211.11	--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12	--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20	-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20	–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2.30	–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2.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3		손수건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4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 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4.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4.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4.40	– 재생 · 반(半) 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6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 부속품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217.90	– 부분품	2 단위 세변변경기준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 전기모포	2 단위 세변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변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4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 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 베드린넨(bed linen)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 면으로 만든 토일랫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6302.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

			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벨런스(valanc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6303.91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침대덮개	
	6304.1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2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6304.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韌皮)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5.32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 기타[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방수포(tarpaulin) · 천막 · 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둑[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방수포(tarpaulin) · 천막 · 차양	
	6306.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 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 기타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터(duster) 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6307.20	-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6307.90	- 기타
	6308	6308.00	러그(rug) 용 · 태피스트리(tapestry) 용 · 자수한 테이블보 용 · 서비스트(serviette) 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309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 배의 뱃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 · 배의 뱃줄(cordage) · 로프 ·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 선별한 것
		6310.90	- 기타
64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 · 리벳팅(riveting) · 네일링(nailing) · 스크루잉(screwing) · 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 보호용 금속 토팝(toe-cap)을 넣은 신발
			- 그 밖의 신발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6401.99	-- 기타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6402.19	-- 기타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신발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신발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파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10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0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6501.00	모체(hat-form) [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 [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	6502.00	모체(hat-shape) [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4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풀이나 뜨개질 편풀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506.91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7	6507.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 [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601.91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2	6602.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6603.2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 꽃·잎·파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파실로 만든 제품	
	6702.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 (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2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2.1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 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면의 길이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 · 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 룰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 박리한 질석(蛭石)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액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 룰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 보드 ·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타일 · 판석 · 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제품	
	6810.91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9	--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켓(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와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6812.91	--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룰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스크(disc) · 와셔(washer) · 패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8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옹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옹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11	-- 탄소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12	-- 탄소섬유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제품	
	6815.91	--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레이트(periclaste) 형태의 마그네시아, 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		도자제품	

	6901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 알루미나(Al ₂ O ₃)·실리카(SiO ₂),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유리(遊離)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 알루미나(Al ₂ O ₃)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 ₂)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축용품	
		6905.10	-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6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흡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관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 관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 호 및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2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3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초과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3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40	- 피니싱 세라믹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09.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09.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09.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빙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0.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1.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1.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2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3.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6914.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0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1.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제 8549 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002	유리로 만든 구(球) [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구(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막대(rod)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관(管)	
	7002.31	--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2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과 률(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 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을 갖는 것	
	7004.20	-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 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충·반사충·무반사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10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1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	7006.00	제 7003 호 · 제 7004 호 ·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불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불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8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009.91	--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2	--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ベル브와 투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기 램프 · 광원,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 · 주방용 · 화장실용 · 사무용 · 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2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 · 구부린 것 · 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20	-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직물)	
		-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7019.11	--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3	--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7019.61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3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직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4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직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5	-- 성기계 직조한 직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6	-- 성기계 직조한 직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6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7019.71	-- 베일(얇은 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7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73	-- 그 밖의 성긴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80	-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펜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1.10	- 천연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양식진주	
		7101.21	--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 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 선별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공업용	
		7102.21	-- 원석(단순히 텁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 원석(단순히 텁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펜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3.10	- 원석, 단순히 텁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실로 펜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4.10	-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원석, 단순히 텁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7104.21	-- 다이아몬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104.91	-- 다이아몬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106.91	--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 반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 화폐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9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플라티늄(platinum)	
	7110.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팔라듐(palladium)	
	7110.2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로듐(rhodium)	
	7110.3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7110.4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3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112.91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3.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4.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5.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7.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7.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118.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			철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1.2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1.5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2		합금철(ferro-alloy)	
			- 폐로망간	
		7202.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2.19	-- 기타 - 폐로실리콘(ferro-silic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1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9	-- 기타 - 폐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 폐로크로뮴(ferr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 기타 - 폐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 폐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70	- 폐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 폐로텅스텐(ferro-tungsten) 과 폐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02.91	-- 폐로티타늄(ferrotitanium) 과 폐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 폐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 폐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 [럼프(lump)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7204.21	--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3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7204.41	--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 (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5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			알갱이와 가루 [선철(銑鐵) ·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루	
		7205.21	--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 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2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 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 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 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6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27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 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7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8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39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 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2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3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54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 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 하지 않은 것	
	7209.15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6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7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8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6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9.27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9.28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09.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12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2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6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70	- 폐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0.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1.14	--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1.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1.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1.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40	- 폐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2.60	-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텁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13.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텁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3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 기타	
	7214.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4.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는 제외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5 호는 제외한다)
	7215.50	- 기타[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6 호는 제외한다)
	721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및 제 7217 호는 제외한다)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16.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18.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1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2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2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3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4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35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9.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12	--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0.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1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30	–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25.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20	–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226.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 · 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받침목(크로스타이) · 이음매판(fish-plate) · 좌철(座鐵) · 좌철(座鐵)쐐기 · 밀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3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튜빙 · 드릴파이프	

		7304.22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 [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심(open seam) ·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69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3	-- 버트(butt) 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307.91	--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3	-- 바트(butt) 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텁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 텁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평도 반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9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엣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 · 대 · 평선을 꼰 것 [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 그릴 · 망 · 울타리 [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7314.4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2	--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9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체인		
	7315.81	--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90	-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7	7317.00	철강으로 만든 끗 · 압정 · 제도용 핀 · 물결 모양 끗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크루 흑(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3	-- 스크루 흑(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3	--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篷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2	-- 액체연료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1.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 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7323.91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3.92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3.93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3.9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3.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목욕통	
	7324.21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4.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7325.9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		구리와 그 제품	
7401	7401.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	
	7403.11	--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3	-- 빌렛(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구리합금	
	7403.21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5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구리의 선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8.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는 제외한다)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 기타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1	--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 기타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1	--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1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0.2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는 제외한다)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2.2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제 7411 호는 제외한다)
741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 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5.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5.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8.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20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419.8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1.2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2.20	- 니켈 합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3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4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봉·프로파일(profile)		
	7505.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505.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선	
	7505.2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7506.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2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		니켈로 만든 판(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 관(管)	
	7507.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7508.1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19	-- 기타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는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7606.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箔) [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9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8 호는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3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폐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615.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흑(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7616.91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616.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7801.10	- 정제한 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7801.91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1.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2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804.11	--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4.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4.2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806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塊)		
			-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1.12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1.20	- 아연 합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2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7903.10	-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3.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4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5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4 단위 세변변경기준
	7907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0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001.20	-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2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3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랫(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볼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101.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102.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5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103.91	-- 도가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괴(塊)	
		8104.11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s)·연삭설(turning)·알갱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 분의 1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 분의 1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109.9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 분의 1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		베릴륨 · 크로뮴 · 하프늄 · 레늄 · 탈륨 · 카드뮴 · 게르마늄 · 바니듐 · 갈륨 · 인듐 · 니오븀(쥘리븀)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베릴륨	
		8112.12	––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크로뮴	
		8112.21	––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49	-- 기타 - 탈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1	-- 과(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9	-- 기타 - 카드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61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69	-- 기타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2	-- 과(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쇄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10	- 가래와 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4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톱날	
		8202.91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 (plier) [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편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 (pipe-cutter) · 볼트크로퍼 (bolt cropper) · 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 플라이어 (plier) [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편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 파이프커터 (pipe-cutter) · 볼트크로퍼 (bolt cropper) · 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텁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 조절할 수 없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 조절할 수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2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폐달식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8205.10	-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 가정용 공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9	--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 블로램프(blow lam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 와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		<p>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 · 스템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 태핑(tapping)용 · 드레딩(threading)용 · 드릴링(drilling)용 · 보링(bor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밀링(milling)용 · 터닝(turning)용 ·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p> <p>-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p>	
	8207.13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 프레싱(pressing)용 · 스템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5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 보링(boring) 용이나 브로칭(broaching) 용 공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 밀링(milling) 용 공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 터닝(turning) 용 공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 금속 가공용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08.20	- 목재 가공용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08.3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08.40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08.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09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0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8211.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1.92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1.93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1.94	-- 칼날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1.95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 면도기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2.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2.90	- 그 밖의 부분품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3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4.2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4.90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5.2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215.99	-- 기타	2 단위 세변변경기준
8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결쇠와 결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 자물쇠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 자동차용 자물쇠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301.30	- 가구용 자물쇠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 결쇠와 결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 ·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 카스터(casto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3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 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4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폐 이페 트레이(paper tray)·폐이페 레스트(paper rest)· 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템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 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 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 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 팅(fitt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 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브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쭉(hook) · 아이(eye) · 아일렛(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 신발류 · 신변장식용품 · 손목시계 · 서적 · 차양 · 가죽제품 · 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 쭉(hook) · 아이(eye) · 아일렛(eyele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캡 ·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screw cap) ·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 · 병용 캡슐 · 나선형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09.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10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 · 납접 · 용접 ·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용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11.3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 · 납접 ·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311.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 원자로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1.2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1.3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 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 보일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2.12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 보일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2.19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2.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2.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 보일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3.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 절약기 · 과열기 · 그을음제거기 · 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 기용 응축기	
	8404.10	-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4.2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4.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 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 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05.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터빈	

	8406.81	--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문품	
	8409.10	-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0.12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0.13	--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터보제트	
		8411.11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1.12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터보프로펠러	
		8411.21	--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1.22	--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8411.82	--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부분품	
		8411.91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펜, 펜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 예인용 바퀴 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팬	
	8414.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 후드(hood) (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7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415.81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퍼(stoker) [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 [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 기계식 스토퍼(stoker) [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 배소(焙燒)용 · 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 · 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 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 일체형 냉장 ·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서랍이나 그 결합물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가정형 냉장고	
	8418.21	--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 침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18.91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기열·건조·증발·옹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2	-- 태양열 물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 장치·유닛과 분무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4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5	--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 중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기	

		8419.81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20.91	-- 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2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ガ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접시세척기	
		8422.11	--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 종 저울 추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 휴대용 방제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4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구	
	8424.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원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 전동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원치(winch)와 캡스턴(capstan)	
	8425.31	-- 전동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 (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캔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계	
	8426.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리ック(teleferic)]	

	8428.10	- 리프트와 스kip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 그 밖의 베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 텔레페리(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70	- 산업용 로봇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밸러(leveller) · 스크레이퍼(scrapers)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로드롤러(road roller)	
		-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 무한궤도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 그레이더(grader) 와 레밸러(levell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 스크레이퍼(scrapers)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a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 탬핑(tamping) 용이나 콤팩팅(compactting) 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 8426 호 · 제 8429 호 ·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 버켓(bucket) · 셔ovel(shovel) · 그랩(grab) 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류러	
		8432.10	- 플라우(챙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8432.31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41	-- 퇴비 살포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2	--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파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 짚이나 건초 결속기[pick-up] 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	--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 착유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 낙농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펠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 종이 · 판지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 종이 ·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39.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 종이백 · 봉지 ·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 제지용 페퍼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 용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 · 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 · 장치 ·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 기계류 · 장치 ·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 위의 기계류 · 장치 ·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 복사 ·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방직준비기계		
	8445.11	--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 방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 · 텔(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 · 터프팅(tufting) 기계	
		- 원형 편기	

	8447.11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펜들 · 스펜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풀 · 셔틀 · 종광(heald) · 종광 프레임 · 메리아스용 바늘]	
		-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 도비(dobby)기 · 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 스픈들 · 스픈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가공 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 용 형(型)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 한다)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평킹(pinking)용 기계	
	8451.10	-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건조기	
	8451.21	--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 세탁기 · 표백기 · 염색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재봉기	
	8452.21	-- 자동식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와 그 부분pics,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pics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원피 ·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 원피 ·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 부분pics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 용 주형과 주조기(야금 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 전로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 잉곳(ingot) 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 주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 부분pics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률	
	8455.10	- 관 압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압연기	
	8455.21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 냉간(冷間) 압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 압연기용 률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1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12	--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50	- 워터제트 절단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 (transfer machine)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 (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수평 선반	
	8458.1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선반	
	8458.9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 · 태평(tapping)에 사용되는 것 [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무릎형 밀링머신 (milling machine)	
	8459.5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밀링머신 (milling machine)	
	8459.6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 (deburring) · 샤프닝 (sharpening) · 그라인딩 (grinding) · 호닝 (honing) · 래핑 (lapping) · 폴리싱 (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랫 (cermet)을 가공하는 것 (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 가공기는 제외한다)	
		- 평면 연삭기	
	8460.12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연삭기	
		8460.22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3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4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 용 · 쉐이핑(shaping) 용 · 슬로팅(slotting) 용 · 브로칭(broaching) 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 용 · 해머링(hammering) 용 · 형(型) 단조용(압연기는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펠침용 · 전단용 · 편침용 · 낫칭(notching) 용 · 니블링(nibbling) 용 [드로우벤치(draw-bench)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 · 슬리팅(slitting) 설비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단조용 · 형 단조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8462.11	-- 밀폐식 형 단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평판제품용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펠침기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를 포함한다]	

	8462.22	-- 프로파일 성형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 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편침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462.32	-- 슬리팅(slitting) 설비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3	-- 수치제어식 전단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판제품용 편침기 · 낫침기 (notching machine) · 니블링기 (nibbling machine) (프레스를 제외하며, 편침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2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 파이프 · 중공(中空)이 있는 형강 · 봉 (bar)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8462.51	--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8462.61	-- 액압식 프레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62	-- 기계식 프레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63	-- 서보프레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6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셔펫(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 드로우벤치(draw-bench) [봉·관·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 선 가공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 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 톱기계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 연마기나 광택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2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465.91	--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 곱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 툴홀더(tool holder) 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 가공용 헌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466.91	--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 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공구	
	8467.81	--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67.91	--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 우편요금계기 · 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hectograph) · 스텐실 (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 지철기 (stapling machine)]	
	8472.10	- 등사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 우편물의 분류기 · 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 · 봉함기 · 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 소호 제 8470.10 호 · 제 8470.21 호 ·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 반죽기(고체 모양 · 분말 모양 ·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 · 돌 · 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 ·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페이스트 · 굳지 않은 시멘트 · 석고 ·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빨브 · 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 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 가공용 기계	
	8475.1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빨브 · 섬광전구(flashbulb) (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 가공용 기계	
	8475.21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계	
	8476.8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 츄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성형기	
	8477.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 토목공사 · 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 동물성이나 비회발성인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 중발식 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탑승교	
	8479.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기	
		8479.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 체 · 시프팅기 (sifting machine)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3	-- 냉간 등압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 용은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텁·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 (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8482.10	- 볼베어링 (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 원추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 구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 그 밖의 베어링 [볼베어링 (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482.91	-- 볼 · 니들 ·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 [캡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 [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 전동축 [캡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날이 붙은 훨 ·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 [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이 붙은 훨,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p>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p>	
	848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5		적층제조기계	
	848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 고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터 · 시멘트 · 세라믹 · 유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 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11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 이 류의 주 제 11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 · 절연체 · 코일 · 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8501.31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교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1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태양광 직류 발전기	
	8501.71	-- 출력이 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72	-- 출력이 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 풍력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유입식 변압기	

	8504.21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변압기		
	8504.31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쳉(chuck) ·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을 훌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 금속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 그 밖의 일차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 그 밖의 연산(鉛酸)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막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 면도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원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 원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 전등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저향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11	-- 열간 등압성형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1	-- 전자 빔 노(爐)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2	-- 플라즈마 · 진공 아크식 노(爐)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 광자빔식 · 초음파식 · 전자빔식 · 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 ·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랫(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땜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 납땜용 인두와 건(gu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 · 헤어컬러(hair curler) ·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 그 밖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 · 제 8525 호 · 제 8527 호 · 제 8528 호의 송신용 ·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3	-- 스마트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 기지국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517.71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 가정주파증폭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테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토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 꾹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여,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기식 매체	
	8523.21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광학식 매체	

		8523.41	--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반도체 매체	
		8523.51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	
		8524.11	-- 액정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4.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524.91	-- 액정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4.9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 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2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방사선 강화 · 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3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3 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526.91	--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527.91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모니터	
	8528.52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4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 · 안전기기 ·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 [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 [가감저항기] (rheostat) 와 전위차계 (potentiometer) 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 (콤파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 (rheostat) 와 전위차계 (potentiometer) 를 포함한다]	

		8533.31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 그 밖의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 (rheostat) 와 전위차계 (potentiometer) 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 퓨즈 · 파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 (surge) 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자동차단기	
		8535.21	--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 파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와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 자동차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계전기 (繼電器)	
		8536.41	--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 그 밖의 개폐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	-- 램프홀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 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필라렌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빌광다이오드(엘아디) 광원	

		8539.1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 아크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발광다이오드(엘아디) 광원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아디) 모듈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아디) 램프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활상관(camera tube)]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 천연색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 단색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 텔레비전용 활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bon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관	
	8540.81	--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8540.91	--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8541.4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 전자집적회로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 메모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 증폭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40	-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전극	
	8545.11	--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8548.00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		전기 · 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12	-- 기타(납 · 카드뮴 · 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13	--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 · 카드뮴 · 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14	--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귀금속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8549.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8549.3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549.9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9.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10	-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4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 차(crane) · 밸러스트 텁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 (trackliner) · 겸사차 · 궤도겸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5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 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 텅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606.91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2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30	- 혹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8607.91	--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8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들,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 · 안전기기 · 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91	--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2	--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초과 37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3	-- 엔진의 동력이 37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4	-- 엔진의 동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3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5	-- 엔진의 동력이 1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3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41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42	--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43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51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52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60	-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	-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 소방차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 (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 [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 소음기(퍼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 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 · 창고 · 부두 ·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차량	
	8709.11	-- 전기식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 부분품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6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 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714.91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 허브(hub) [코스터 브레이킹 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 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 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 그 밖의 차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8801.00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 8806 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 헬리콥터	
		8802.11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		무인기	
	8806.10	-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 7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 7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6.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7		제 8801 호 · 제 8802 호 · 제 8806 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7.20	-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7.30	- 비행기 · 헬리콥터 · 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 탱커(tanker)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짓는 보트 와 카누	
			- 공기주입식 보트(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범선(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903.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모터보트[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	
		8903.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8903.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艇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 준설선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 군함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 (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8907.10	- 공기주입식 부교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 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 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 · 영사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 필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 · 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 테와 장착구	
		9003.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 쌍안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3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 즉석인화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사진기	
	9006.53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 촬영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20	- 영사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 촬영기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 영사기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 투영기 · 확대기와 축소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 를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10.5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10.60	- 영사용 스크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 입체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 그 밖의 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9012.1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레이저기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 레이저기기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 [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 [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5.10	- 거리측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리(視距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 수준기(水準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 사진측량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6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체·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주사기 · 바늘 · 카테터 (catheter) · 캐뉼러 (cannula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 (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 (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 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 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정기, 결합·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9021.31	-- 인공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 보정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 엑스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 기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20	- 액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 전기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 · 검사용은 제외한다)	
	9030.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개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기기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8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 균형시험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1.4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1.80	-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6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기기	
	9032.81	-- 액압식이나 공기식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2.8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101.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101.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9101.91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101.9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9102.91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2.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 (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4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			그 밖의 클록(clock)	
			- 자명종시계	
		9105.11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벽시계	
		9105.21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9105.91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 [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7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전기 작동식의 것	
		9108.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20	-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0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2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19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0.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80	- 그 밖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1.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2.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30	-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40	-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1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전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20	-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	-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6	9206.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	- 전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 메카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ソー(musical saw) 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8.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 · 디스크 · 룰),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9209.91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2	--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4	--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209.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 [리볼버(revolver) · 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	리볼버(revolver) 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 ·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 (line-throwing gun)]	
	9303.10	-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9305.91	--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	9307.00	겸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 항공기용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20	- 차량용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3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4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등나무 · 벼드나무 가지(osier) · 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2	-- 대나무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3	-- 등나무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5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6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7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80	- 그 밖의 의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부분품	

		9401.91	-- 목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1.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젓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2	-- 대나무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3	-- 등나무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3.8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부분품	
		9403.91	-- 목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매트리스	
		9404.21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40	- 이불 · 침대보 · 솜털이불 · 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1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조명	

		9405.2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	
		9405.3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41	-- 광전(光電)식의 것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2	-- 기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9	-- 기타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9	--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부분품	
		9405.91	--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2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5.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406		9406.10	조립식 건축물	
		9406.10	- 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20	-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폐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당구용구 ·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 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 · 은행권 · 은행 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5.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육외게임용품(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페들링풀(paddling pool)용품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 스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12	-- 스키파스닝(ski-fastening) (스키바인딩)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32	-- 골프공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3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40	- 탁구용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	-- 론텅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5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 론텅니스(lawn-tennis) 공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62	-- 공기주입식의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6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506.7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기타	

		9506.91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6.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	-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2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30	-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7.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 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9508.21	-- 롤러코스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2	--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3	-- 범퍼카(Dodge' em c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5	-- 물놀이용 탈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6	-- 워터파크 놀이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30	- 유원지용 오락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508.40	- 순회극장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1.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2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숄(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폐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3.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3.3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3.4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3.5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3.90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4	9604.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5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 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 단추	
		9606.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6.22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6.2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6.3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 기타	4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 부분품	4 단위 세변변경기준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 볼펜	6 단위 세변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 기타	
		9608.91	-- 펜촉과 낍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단·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2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09.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0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1	9611.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플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 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2.20	-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2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80	- 그 밖의 라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3.90	-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 시가 홀더 · 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hair curler) 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5.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 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 와 두부(頭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6.2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7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19	위생 타월(패드) · 탬пон(tampon), 냅킨(기저귀) · 냅킨라이너(napkin liner) 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2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9701	회화 · 데생 ·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 · 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1	-- 회화 · 데생 ·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22	-- 모자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기타	
	9701.91	– 회화 · 데생 ·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92	– 모자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1.9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2		오리지널 동판화 · 목판화 · 석판화	
	9702.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2.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 (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3.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4	9704.00	우표 ·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 · 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21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2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5.3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06.90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